

의안 번호	1104
----------	------

수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목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차장운영 조례개정 청원의 건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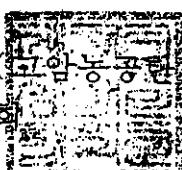
불임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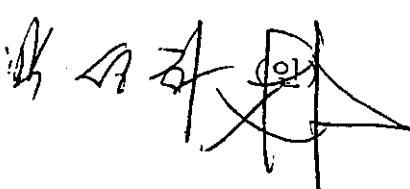
주 소 : 제천시 고암동 145-13 (고암동 공원지내)

제천시장애인협회

성 명 : 김 근 수



소개의원(대표) :



청 원 서

오늘도 제천시의 행정과 14만 시민의 살림을 감시 감독하시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비판의 소리를 내시는 존경하시는 제천시 의회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우리지역 8천 장애인들은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들은 이 좁은 지역에서 늘 지도층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반년 동안 짧지 않은 자성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의식을 가꾸고 있다는 것 또한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우리의 14만 시민이 살고 있는 주변은 온통 장애와 만날 수 있는 엉성한 환경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역 8천 장애인중 89.4%가 중도 장애인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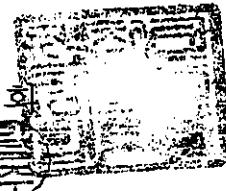
이들중 상당수는 삶을 체념한채 고통과 실의에 빠져 희망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제천시 장애인협회 임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고용창출을 통해 정상인들과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는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 했습니다.

따라서 14만 시민이 주체인 8천 장애인협회 회원들을 2만 장애인 가족과 함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없어 뜻있는 시민들과 저희들의 자립의지로 조례 개정을 청원하오니 우리지역 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 힘겹고 무거운 삶에 지쳐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8천 장애인과 2만이 넘는 가족들의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더듬어 주시길 우리 모두는 청원 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

제 천 시 장 애 인 협 회
회 장 김 근



- ※첨부 1. 청원취지 및 개정사항
- 2. 종평군 주차장 관련조례 1부. 끝.

청원 취지 및 조례개정 사항

〈청원취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애의 노력과 사회 참여에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그들의 장애를 가능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직업적, 경제적 자립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6년-96년 동안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을 수탁하여 약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삶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작은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으나 97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가 박탈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이 장애인의 경제자립과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사항〉

장애인 단체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수탁할 수 있도록 제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 요망.

〈참고사항〉

가까운 증평군은 이미 2002년 1월 1일부터 군 전역의 주차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음.

괴산군 주차장 조례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제정 1986. 4. 26 조례 제984호
 개정 1988. 12. 5 조례 제1135호
 개정 1993. 4. 23 조례 제1406호
 개정 1995. 10. 9 조례 제1483호
 개정 1998. 3. 2 조례 제1564호
 개정 1998. 11. 16 조례 제1592호
 개정 1999. 11. 12 조례 제1620호
 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금을 부과한다.

- 법 제9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주차수요 밀집시간(08:00 ~ 10:00) 주차시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괴산군 주차장 조례

있다. 단,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3.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자종 보철대상자 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
4.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5. 모범납세의무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의 100% (신설 1999. 11. 12 조례 제1620호)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 등록된 자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승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05. 5. 3 조례 제1807호)

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1.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군수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의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 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용료 또는 국공유 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납부
기타의 경우	경쟁 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납부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삭제(1999. 11. 12 조례 제1620호)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1(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노상주차장중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4호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기준등) 삭제(1999. 11. 12 조례 제1620호)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제13조(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 삭제(1999. 11. 12 조례 제1620호)

제14조(주차장설치 심의등) 삭제(1999. 11. 12 조례 제1620호)

제3장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어업용시설종 축사·창고·식물관련시설은 별표2의 설치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로 한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이(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②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괴산군 주차장 조례

건축토지와의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제2호 토지가액 방법 준용)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증액 또는 감액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1999. 11. 12 조례 제1620호)
제19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인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에 대하여는 영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제20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1999. 11. 12 조례 제1620호)

제21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제15조 「별표2」 비교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坦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
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시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기준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
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괴산군 주차장 조례

처분대상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10. 9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3. 2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6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12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 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허가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설치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3 조례 제1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설치허가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